

지방의회공제회법안 (이광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17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0.

발 의 자 : 이광희 · 김문수 · 김태년
민병덕 · 김우영 · 양부남
박지원 · 권향엽 · 장종태
임미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 제정·개정, 예산·결산 심의 등 지방자치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. 그러나 지방의원은 선출직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,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. 또한, 임기 종료 또는 낙선 시에 소득이 단절되는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한편 지방의회 사무처·사무국·사무과 등 사무기구의 직원은 기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 대상이기는 하나,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복지체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지방의회위원을 중심으로 하되,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원도 가입할 수 있는 공제회를 설립하여 회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지방의회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·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,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지방의회공제회의 정관으로 주된 사무소 및 지부, 회원의 자격 및 권리·의무, 부담금 및 급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).
- 다. 지방의회공제회에 최고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두고 정관의 변경, 임원의 선출,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 등의 사항을 의결함(안 제8조).
- 라. 지방의회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, 5명 이내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둠(안 제10조).
- 마. 지방의회공제회는 급여의 지급, 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, 자산운용 등의 사업을 함(안 제11조).

지방의회공제회법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의회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·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,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인격 및 등기) ① 지방의회공제회(이하 “공제회”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한다.

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제3조(사무소)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정치활동의 금지) ① 공제회는 그 명의로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.

제5조(정관)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

한다.

1. 목적 및 명칭
2. 주된 사무소 및 지부
3. 회원의 자격 및 권리·의무
4. 부담금 및 급여
5. 조직 및 운영
6. 사업 및 자산·회계·결산
7.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제6조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지방의회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제2장 회원 및 조직

제7조(회원의 자격 및 권리·의무)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
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의회의원
2. 지방의회의 사무기구(지방의회의 사무처·사무국·사무과를 말한

다)에 근무하는 공무원

3.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

4.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

③ 공제회의 회원은 「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」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할 수 없다.

④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공제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탈퇴하여야 한다.

⑤ 특별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서 퇴직한 사람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⑥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를 받을 권리와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.

⑦ 회원은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.

⑧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의 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8조(대의원회) ① 공제회에 최고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두고 다음 각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정관의 변경

2. 임원의 선출

3.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

4. 결산 승인

5. 중요 자산의 취득과 처분

6.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

② 대의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종류와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선출한다.

제9조(운영위원회) ① 공제회의 사업운영 세부계획 및 자산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이사장, 이사 및 정관으로 정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.

제10조(임원) ① 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, 5명 이내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.

②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장 사업 및 재정

제11조(사업)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
2. 회원을 위한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, 운영
3. 기금 조성을 위한 자산운용 및 수익 사업
4. 회원의 임기 종료 또는 퇴직 시 생활안정 지원

5. 회원의 질병·사고 시 지원

6. 그 밖에 회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

제12조(재정) ① 공제회의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국가는 공제회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회원이 납부하는 부담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연차별로 분할할 수 있다.

제14조(예산 및 결산)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, 재산목록,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장 회원의 보호 및 감독

제15조(준비금의 적립) 공제회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

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.

제16조(소멸시효)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(時效)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

제17조(회원의 권리 보호 등) ① 공제회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탈퇴하고 공제회에 가입한 회원에게 급여의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공제회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복지시설의 공동 이용 등 상호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8조(경영정보의 공시 등) 공제회는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예산 현황, 자산운용 현황 등 주요 경영정보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시하여야 하며 자산운용 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.

제19조(감독)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회의 업무를 감독하고, 필요한 경우 공제회에 그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.

제20조(「민법」의 준용)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1조(과태료) ① 제6조를 위반하여 지방의회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제회의 설립준비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1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설립위원은 설립사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
③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공제회의 임원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.

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의하여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

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.